



『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와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상호교류 협약서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제1조(목적) “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 (이하 “재활공학과”)와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이하 “장애인체육회”)는 상호 협력을 통한 대구광역시 장애인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하기로 하고 장애인체육 현장으로의 연계를 통하여 대구지역 장애인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2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계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별도의 서면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업무협약 범위) 협약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장애인체육회”는 “재활공학과”와 장애인체육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가. 장애인체육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재활공학과 동아리의 봉사활동 인정
 - 나. 장애인스포츠단과 동아리의 화합, 단합을 위한 정기모임 주최
 - 다. 우수봉사자 선정 및 장애인스포츠단 봉사활동 필요 물품 지원
 - 라. 성서운동장 내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개설을 적극 홍보
2. “재활공학과”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연계하고 추진되는 활동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제공한다.
 - 가. 장애인스포츠단 훈련 보조 봉사
 - 나. 장애인스포츠단 서포터즈 활동
 - 다. 장애인스포츠단 대회, 행사 등 봉사 활동
 - 라. 장애인스포츠단 장비 수리 및 관리 보조

제4조(변경 및 해지) “재활공학과” 와 “장애인체육회” 는 서로 상호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협약 이행에 불성실하여 공신력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
3.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협약 해지가 불가피할 때

제5조(비밀유지) “재활공학과” 와 “장애인체육회” 는 본 협약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및 이용자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상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기 타) 이 협약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와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이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하고 각각 1부를 보관한다.

2023. 3. 22.



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

학과장 이근민

서명 :

이근민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회장 홍준표

서명(代) :

홍연수